

심 의 의 결 서

(제10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)

□ 심의안건

안 건 명	의결사항 (○ 또는 √)
제1호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	(可) · (否)
제2호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(안)	(可) · (否)
제3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(매수토지) 매각(안)	(可) · (否)

□ 검토의견

<제1호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>
○ 검토의견 : 불임

<제2호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(안)>
○ 검토의견 : 불임

<제3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(매수토지) 매각(안)>
○ 검토의견 : 불임

위 원 :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 서 명 : 배광환(인) *배광환*

〈붙임〉

검 토 의 견

〈서울특별시〉

- 제1호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 - 환경기초시설설치·생태하천복원사업·비점오염저감사업의 국고 조정·확정에 따른 기금 사업비 증액 및 여유자금운용 감액 사항은 동의함.
 - 다만,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므로 향후 기금지원은 점차 축소 및 폐지 재검토 필요

- 제2호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(안)
 - 법률 제명 개정 및 용어 변경으로 동 기준안 개정(안)에 동의함
 - ※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기준 제도개선안 건의(서울시 물순환정책과 -20159, 2017.10.20.) 및 한강수계실무자 회의 시('18.4.26.) 냄새물질을 추가한 지원기준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는바, 관련규정 개정 등 지원기준 마련 검토·추진 필요

- 제3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(매수토지) 관리전환(안)
 - 동 건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동의하나,
 - 한강수계위에서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이므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전환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환경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의강화 필요
 - 또한, 동 건은 '12.11. 토지매수 후 '12.12. 강 정비 사업이 착수되었는 바, 향후 동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토지매수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필요
 - ※ 동 대상지 토지매수일('12.11.29), 정비사업('12.12~'18.12.)